

## 임예진 관세법(2023년 대비) 개정사항 (6)

- 관세법 시행규칙 2023. 3. 20. 개정 [시행 2023. 3. 20.]
-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3. 3. 20. 개정 [시행 2023. 3. 20.]

### \* 공지사항

2023년 3월 20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,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.

p.71 : 2-1. (4) 관련 시행령 박스

### 개정 전

- ♦ [규칙 제9조의3 (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)]  
영 제56조 제2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.

### 개정 후

- ♦ [규칙 제9조의3 (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)]  
영 제56조 제2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.

p.254 : 4. (2) 관련 시행규칙 박스

### 개정 전

####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[규칙 제9조의3]

상기 4. (2)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.

### 개정 후

####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[규칙 제9조의3]

상기 4. (2)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.

p.433 : 1. (4) 관련 시행규칙 박스

3. 특허수수료의 감경

상기 1. (4)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상기 1. 및 2.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
4. 납부기한

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,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.

개정 전	개정 후
2021년 12월 31일까지	2022년 12월 31일까지
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	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

p.546 : 4. (1) 관련 시행규칙 박스

통관목록 [규칙 제79조의2 제2항]

상기 4. (1) ③ 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.

- ① 운송업자명
- ②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
- ③ 선하증권 번호
- ④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번호
- 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

개정 전	개정 후
④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번호	④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

p.662 : 2. 관련 시행규칙 박스

상기 2.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.

- ①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
-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

개정 전	개정 후
외국환은행의 장이	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